

(비공식 번역본)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 4/2563호

중소기업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촉진방법(SMEs)

중소기업가들의 사업분야에 대한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만들어 성장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불교년 2520년 투자촉진법 제16항, 18항, 31항 31/1항, 35항을 따르는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가들의 투자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알림

1.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 위원회 안내사항 제2/2557호 그룹A와 B1에 속하는 활동범주 사업은 중소기업가들의 투자촉진방법에 대한 지정된 내용을 알리며 활동범주 7.23.1 호텔사업은 객실이 50개 이상이면서 99개를 넘지않고 투자금(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이 1개의 방마다 100만바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며 제외함

조건

- (1) 각 프로젝트마다 최소 투자금액은 500,000바트(토지와 순환제본 제외)여야 함
- (2) 투자등록을 한 최소 51%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태국 자연인이 있어야함
- (3) 부채에 대한 비율이 4:1을 넘지 않아야 함
- (4) 투자촉진을 받는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해 온 중고 기계를 사용하는것은 1억바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국내에서 사용한 기계에 대한 가치 계산은 기록된 회계장부를 참조하며 50% 이상의 비율이 되도록 프로젝트에서 사용될 기계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함
- (5) 투자촉진을 받는 모든 사업과 투자촉진을 받지 않는 사업을 포함해 투자촉진을 요청하는 자는 매년 수익이 5억바트를 넘지 않아야 하며 이는 투자촉진을 요청한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 수입이 생긴 날을 기준으로 3년

권리와 혜택

- (1) 들여오는 기계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
- (2) 활동범주 그룹A에 해당되는 사업에 투자된 투자금(토지와 순환자본 제외)의 200%에 해당하는 법인세 면제 혜택을 줌
- (3) 2014년 12월 3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2/2557호에 따른 규율을 따

르는 권리와 혜택을 줌

2. 가치에 따른 혜택과 권리(Merit-based Incentives)는 국가나 산업의 발전을 위해 투자동기를 부여하거나 이에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것으로 투자촉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프로젝트에 부여함

2.1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권리와 혜택 부여

- (1) 기술과 혁신을 위한 분석과 개발, 스스로 이행 또는 국내 또는 국외로부터의 고용을 통한 스스로의 분석과 개발을 위한 부분으로 투자 또는 사용된 비용의 300%로 계산
- (2) 투자촉진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은 기술과 피고용인을 위한 투자지원, 교육기관, 분석기관과 과학과 기술분야의 시설에 해당되는 훈련기관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 또는 사용된 비용의 100%로 계산
- (3) 국내로부터 개발된 기술을 사용할 권리에 대한 비용은 투자 또는 사용되는 비용의 200%로 계산
- (4)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는 직업훈련의 경우 투자 또는 비용의 200%로 계산
- (5) 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프로젝트를 스스로 진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제품과 패키지를 디자인하는 경우 투자 또는 비용의 200%로 계산

투자촉진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는 권리와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따름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은 아래와 같음

- (1) 위에서 언급 한 투자 또는 지출이 처음 3 년간 총 판매액의 0.5 %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1년 동안 법인 소득세 면제가 부여되며 이는 총 최대 13년을 넘지않음
- (2) 위에서 언급 한 투자 또는 지출이 처음 3 년간 총 판매액의 1 %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2년 동안 법인 소득세 면제가 부여되며 이는 총 최대 13년을 넘지않음
- (3) 위에서 언급 한 투자 또는 지출이 처음 3 년간 총 판매액의 1.5 % 이상인 경우, 추가적으로 3년 동안 법인 소득세 면제가 부여되며 이는 총 최대 13년을 넘지않음

2.2 지역번영을 위한 추가 권리와 혜택

20개의 주에 해당되는 깔라신, 푸켓, 나컨파놈, 봉간, 부리람, 패, 마하싸라캄, 묵다한, 매형썬, 요싸턴, 러이엣, 씨싸갯, 싸껀나컨, 싸깨우, 썬코타이, 썬린, 녕부아람푸, 우본 랏차타니, 암낫짜른에 설립을 하는 경우 3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총합 8년을 넘지말아야 하고 활동범주그룹의 A1 또는 A2의 경우 법인세 추가 감면 혜택 50%를 5년동안 부여하며 이는 법인세 면제혜택을 받은 날부터 계산

2.3 산업 지대를 발전시키기 위한 권리와 혜택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지대나 구역에 설립을 하는 경우 1년의 추가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며 총합 8년을 넘지 말아야 하고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단지나 지대에 설립해야 한다는 강제 조건이 있는 활동범주의 사업은 제외

2.4 특별 사업개발구역의 투자촉진을 받는 법을 따르는 권리와 혜택(SEZ)

특별 사업개발구역(SEZ)에 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투자금(토지나 순환 자본 제외)의 200%만큼 추가 감면 해주며 이는 특별 사업개발구역의 투자촉진을 받는 법의 권리와 혜택을 따름

2.5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른 추가 권리와 혜택 요청

(1) 활동범주 A에 속하는 사업은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른 추가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촉진을 요청할 시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이후에 요청할 수 있음

투자촉진을 받은 이후에 요청을 하는 경우, 투자촉진을 받는 자는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투자촉진을 신청하는날의 수입의 액수에 상관없이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때 법인세 면제 권리와 혜택을 받고 있어야하며 31항을 따라 이에 대한 기간과 법인세 면제를 받은 금액은 남아있어야함

(2) 활동범주 그룹B1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의 가치에 따른 추가 권리와 혜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촉진을 요청 할 시 같이 요청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회계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

3. 이 내용은 2014년 12월 1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4/2557호 특별 사업 개발구역 투자정책과 2017년 10월 28일에 고시된 투자촉진위원회 안내사항 제9/2560호 생산의 효율성과 다른 관련사항의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방법에 의거하여 투자촉진 규정과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알림
4. 이 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2021년 마지막날까지 투자촉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위와 같은 내용을 지금부터 적용

2020년 3월 11일에 고시

General Prayut Chan-o-cha

(Prayut Chan-o-cha)

총리

투자촉진위원회장